

기업신속대응센터 운영규정

- 제정 : 2019. 3. 1.
- 개정 : 2019. 6. 1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와 산업체의 산학협력을 장려하고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신속대응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센터는 산학협력단 산하기구로 설치한다.

제3조(직무) 센터는 원스톱 기업지원,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의 특성, 여건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원스톱 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2. 애로상담, 기술지도 및 기술·경영자문·디자인 시제품 제작지원 등 맞춤형 기업지원에 관한 업무
3. 산학연계 맞춤형 기업지원 협력사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기타 기업지원 및 산학협력과 관련된 사업 운영 및 관리

제5조(조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업신속대응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기획처장, 산학협력처장, 학생복지처장, 기업신속대응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업신속대응센터 소속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기업기술지원전문위원회) ①기술지도 수요자 편의 증대를 위한 기업기술지원전문위원(Tech Doctor)으로 구성된 기업기술지원전문위원회를 둔다.

②기업기술지원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재정) 센터의 재원은 교비·산단 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9조(예산 및 결산) 예산 및 결산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세칙) 본 규정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및 업무처리를 위한 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